교직원상조회규정

개정 1994. 7. 25.
개정 2001. 2. 15.
개정 2003. 10. 1.
개정 2006. 3. 30.
개정 2014. 3. 17.
개정 2015. 4. 9.
개정 2015. 9. 24
개정 2017. 12. 13
개정 2018. 9. 20

제1조(명 칭) 본회는 상지대학교 교직원 상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교직원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상지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한다.
제5조(자격기간) 본회 회원의 자격기간은 발령을 받은 날로 부터 퇴직한 날 까지 한다. 단,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자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개정 2015.4.9)

1. 회 장 1인
2. 운영위원 10인 내외
3. 총 무 1인
4. 감 사 1인

제7조(회장) ①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중 1인을 선출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 09. 24)
③ 차기 회장은 부회장으로 하며 단과대학 순번으로 정한다
차기회장순번 1.예체대 2.생자대 3,인사대 4.이공대 5.한의대 6.보건대 7.경상대 8.교양대학 순으로 한다. (개정 2018. 9.20.)
제8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각 단과대학장이 각기 추천한 8인(임기는 2년) 교무연구팀장, 학생지원팀장, 총무팀장은 보직에 의한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② 회장 선출로 인한 1인의 운영위원 공석에 대한 보충은 운영위원은 회장의 소속대학 교직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총 무) 총무는 총무팀 소속 근무자로 하며 당연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9.20.)

제10조(감 사)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회계와 업무진행에 관하여 감사한 결과를 운영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의 장)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직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수립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회비, 급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고 정기 회의는 매 학기 초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 비) ① 본회의 회비는 2006년 4월부터 매월 회원의 급료에서 본봉의 0.5%를 납부한다. 단, 적립금이 1억원 이하로 되었을 때, 회비를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3.30.)

② 회비는 회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급료에서 납부하되 경리부에서 일괄 공제하여 본회의 예금구좌로 송금한다.(무급 휴직자(정직자)는 복귀시 휴직기간 중의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다)(개정 2015.4.9.)

제16조(급여금) ① 본 규정에 의한 급여금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운영비지출) 회장은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비를 지출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1. 출장(교통)비
2. 용품구입비
3. 기 타

제17조(급여금 청구 및 지급) 본 규정에 의한 급여금을 받을 회원은 급여 사유가 발생할 날 30일전부터 사후 3년 이내에 청구서식(별표2)을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한다.(개정 2017.12.13.)(단.2017년 12.13부터 3년 전까지 적용한다)(개정 2017.12.13.)

1.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단,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때는 회원 2인이 입보하여야 한다.)
2. 회갑, 칠순, 팔순 등의 경우 호적상(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와 다른 때에는 청첩장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급여금을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4.9)
3. 급여금은 계좌로 반드시 지급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현금지급을 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개정 2014. 9.17.)

제18조(급여금의 수령자) 본 규약에 의하여 급여금을 회원이 아닌 자가 수령하고자 할 때는 공무원연금법 지급 순위에 준한다.

제19조(기금조성) 본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회원의 회비
2. 예금 이자 수입
3. 회원 기부금
4. 보조금 및 기타 수입

제2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 는 상지대학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21조(장부와 서류) 본 회의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원,임원 명부
2. 회의록, 회의자료, 보고서류
3. 세입, 세출부
4. 현금출납부
5. 회비 징수부
6. 급여금 지출서류 및 증빙서류철
7. 기타 중요한 장부와 서류

제22조(시행세칙)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급여금 지급액

단위(원)

급여금구분	지급액	비 고
회원 결혼	500,000	1. 회원의 부모, 처부모, 시댁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2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2. 회원의 부모, 처부모, 시댁부모의 별세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2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장손으로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 65세 모 58세 이상으로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음이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부모님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4.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된 분의 별세 때 인원에 제한 없이 조화를 제공한다. 5. 회원의 결혼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급 한다. 6. 회원 자녀 결혼 시 2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회원 자녀 결혼	500,000	
회원 회갑	700,000	
회원 부모 회갑,칠순,팔순 (친부모,처부모, 시댁부모중 택2)	500,000	
회원 배우자 회갑	500,000	
회원 배우자 별세	1,000,000	
회원 부모 별세 (친부모,처부모, 시댁 부모 중 택2)	1,000,000	
회원 자녀 사망	1,000,000	
회원 별세	(퇴직급여금으로지급) 5,000,000	
회원 퇴직	2년이상근무시 (년수×100,000) +[(○개월/12개월) ×100,000)]	

별표2)

<table>
<tr><td colspan="2" rowspan="2">급여금 신청서</td><td rowspan="2">결
재</td><td>총 무</td><td>회 장</td></tr>
<tr><td></td><td></td></tr>
<tr><td>급여사유
(ex. 결혼,회갑,사망..)</td><td>근거일자</td><td colspan="2">청 구 액</td><td>증빙서류</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5">내 역 :

상지대학교 상조회 규정 제16조(급여금) 및 제17조(급여금 청구)에 따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td></tr>
<tr><td rowspan="4">급 여 금
수령방법</td><td>직접수령 ( )</td><td>현 금</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계좌입금 ( )</td><td>예 금 주</td><td colspan="2"></td></tr>
<tr><td>계좌번호</td><td colspan="2"></td></tr>
<tr><td>은 행 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상 지 대 학 교 상 조 회 장 귀 하</td></tr>
</table>

영 수 증

상기 신청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 (인)